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2019. 12.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개요

제1조(목적 및 연혁)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 국가적 대형행사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취지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2001.1.27).

② 동 제도의 추진 목적은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문화관광의 올바른 풍토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관광한국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다.

③ 당초 동 제도가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해설 영역이나 활동지역이 생태·녹색관광, 농어촌 체험관광, 관광지, 관광단지 등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문화유산해설사' 명칭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 추진하였다.(2005.8.1).

④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증 제도가 아니며, 동 사업의 총괄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 시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표 1>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연혁

2001. 1. 22.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 최초 수립
2001. 1. 27.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 지침 시달 (문화관광부→ 시·도)
2002. 12. 31.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인원 1,000명 목표 달성
2005. 8. 1.	'문화유산해설사' 명칭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
2009. 12. 3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인원 2,000명 목표달성
2011. 4. 5.	관광진흥법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법제화, 교육과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2011. 10. 6.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2012. 1. 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 활용 고시 제정
2017. 12.	문화관광해설사 통합 예약 및 관리시스템 개발
2018. 12. 11.	관광진흥법 개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2019. 3.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2019. 3.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 활용 고시 개정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제2조(문화관광해설사 정의)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한다.

제3조(문화관광해설사 역할)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해당 활동지역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의 방문 목적, 관심 분야, 연령 등 다양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여흥적 해설로부터 해당 활동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정보를 생산·확산시키며, 해당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며,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④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재를 비롯해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과 해당 활동지역의 문화관광 홍보대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3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제4조(위탁교육기관 선정) ①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신규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기관 선정 시 교육기관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전문강사 인력, 사업예산 구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신규양성교육기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③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 후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위탁기관 선정 시 반영한다.

제5조(신규양성교육과정 대상자 선정) ①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과정의 대상자 모집을 위한 선정 기준은 필수 조건과 우대 조건으로 구분하고 다음 항목들을 평가 시 고려한다.

<표 2> 필수 조건

① 기본 소양을 갖춘 자
② 정확한 언어 구사능력
③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지와 사명감
④ 관광서비스 마인드
⑤ 지속적인 활동 가능 자

<표 3> 우대 조건

① 해당분야 전문지식 (예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② 외국어 구사능력 (예 : 외국어 능력시험결과, 주한 외국인, 해외 거주경험, 결혼이민자)
③ 유사 해설활동 또는 자원봉사 경력자
④ 수화 가능자 등 장애인 관광안내 가능자
⑤ 취약계층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양성교육과정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을 포함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별첨양식 ②), 자기소개서, 자원봉사 활동 서약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외부 전문가의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인터뷰를 통해 희망자의 기본 소양과 언어 구사능력, 지속적인 활동 참여 의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6조(신규양성교육과정 운영) ① 신규양성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신규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기본소양과 전문지식, 해설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양성교육과정은 <표4>에 따라 신규양성교육과정 교육내용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 중에 총 10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현장체험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50%이상 되어야 한다.

<표 4> 신규양성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 내용		시간	비고
기본 소양	① 해설사 역할과 자세 ② 문화관광자원 가치 인식 및 보호 ③ 관광객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20시간	- 교육은 ①부터 ⑨까지의 전 과목을 실시하여야 함 - 이론교육은 온라인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전문 지식	④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 이해 ⑤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 이해 ⑥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 이해	40시간	
현장 실무	⑦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⑧ 해설 현장 실습 ⑨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40시간	
총 계		**100시간**	

* 단,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추가할 수 있음

③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양성교육과정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며, 수료 후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활동하게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5>의 <현장시연평가기준>에 따른 교육과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 대상들에 대한 현장시연평가(별첨양식 ③)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5> 신규양성교육과정 수료 및 평가 기준

<수료 기준>

기본 출석률 이수(최소 80%이상) 및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70점 이상

<현장시연평가 기준>

수료기준 충족자 가운데, 현장시연평가 70점 이상 최종 합격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규양성교육과정 평가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자에 대한 현장 수습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 이수토록 하여야 하며, 현장수습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105시간 실시한다.

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 수습과정에는 실제 현장 실습 및 기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 참관을 통하여 해설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배가시키도록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발급) ① 제6조 제4항에 따른 현장 수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표식)를 발급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 ID 카드는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제작 지침’(별첨양식 ⑥)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ID카드가 발급된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서약서’(별첨양식 ①)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문화관광해설사의 ID카드를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교육과정 운영) ①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되었거나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심화된 표현기술 및 해설 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과정 대상자들의 특성과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교육과목 및 강사진 선정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신규양성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교육 내용으로 기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은 <표6>에 따라 예시된 보수교육과정 교육내용에 근거(준)하여 당해 연도 중에 총 24시간 이상 실시하되, 활동경력별 차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할 수 있다.

<표 6> 보수교육과정 교육내용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기본 소양	1) 해설사 역할과 자세 2) 문화관광자원 가치 인식 및 보호 3) 관광객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24시간 이상 (실습포함)
전문 지식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 이해 5)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 이해	
현장 실무	6)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해설 기법 7)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④ 보수교육과정의 수료와 평가의 기준은 출석률 80%이상과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각 70점 이상으로 하며, 시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교육과정 실시 후에 강의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교육생들의 평가 결과를 수렴하여 위탁교육기관 선정 및 차기 교육 과정 기획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관광·문화예술기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해당 교육 이수시간을 보수교육과정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관리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및 배치)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2. 신규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3.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개선 설문조사 계획
4.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관람동선 개발, 장애인 유형별 맞춤 관광해설 프로그램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경우, 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배치방식과 인원을 결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전공분야 및 전문지식, 교통, 해설언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특정 장소에 상시 배치해서는 아니 되며, 활동일 1일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1인당 최소 2회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의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배치장소를 선정할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영역 확대 차원에서 국·도립공원 등 자연·생태자원 및 숲, 농·어촌체험 관광지 등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보관광코스, 시티투어, 체험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 초·중등 수학여행의 내실화를 위해 수학여행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⑧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해설활동 이외의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안내소 직원 대신 관광안내소에 배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대기를 위한 목적으로 관광안내소 활용은 가능하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활동비의 지급)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으로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해설역량 향상과 관련된 교육 및 수습기간은 활동일수에서 제외된다. 단 식비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지급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일지(활동내역)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해설사가 작성한 활동일지의 내용이 일반 단순 안내사항(길안내 등) 기재 등 미흡한 경우
3. 주유비, 간식비 등 제9조 제4항에 따른 활동비 이외의 비용
4. 문화관광해설사의 외부보수교육, 워크숍 등의 교육 참여(단, 교통비에 준하는 실비 지급은 가능)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 관리)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군·구에서 양성되어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인력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적 관리 및 차기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관리를 위해 통일된 양식의 활동일지(별첨양식 ④)를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공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교육 수료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전까지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www.ctgs.kr) 및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입력해야 한다.

⑤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해설활동의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광객 민원분석, 문화관광해설사 근태관리를 위한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별첨양식 ⑤ 활용).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통보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의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 경고, 배치 제외)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계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기적인 활동실적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활동 자격을 즉시 취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시점에서 5년간 신규선발에 지원할 수 없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활동 경고 및 배치 제외할 수 있다. 단, 제2호 가, 나, 다목의 경우 배치 제외하여야 한다.

1. 경고

가.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불친절, 태도불량 등)

나.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다.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라.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마.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바.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유료로 문화관광 해설활동을 한 경우

사. 보수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아. 관광객, 동료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또는 위압적 행위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

자.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배치를 요구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차. 연속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카. 연간 60일 미만 활동을 한 경우

타.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2. 배치 제외

가. 최근 3년 이내에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

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다. 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라.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마.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고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 바목 적용 시, 유료해설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전에 <별첨 양식 ⑦ 문화관광해설사 유료해설활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3항 제1호 차목 및 카목 적용 시, 출산·육아·질병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증빙 필요)

⑤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제3항 제1호에 따라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3개월 간 배치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3항 제2호에 따른 배치 제외기간은 5년으로 하며 배치 제외된 자가 다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5조의 신규양성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치 제외 처분을 한 경우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 홍보 및 사전예약제도)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 시스템(www.ctgs.kr)에 관광지 및 해설사 정보 등 필요사항을 상시 업데이트 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관리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안내센터 및 관광안내지도,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와 예약방법 등에 관한 안내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의 입구나 매표소 주변에 해설서비스 안내와 해설시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4조(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①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 대기 장소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 설비, 해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제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들(타지방자치단체 활동 문화관광해설사 포함)에 한하여 관내 문화재 관람료 및 자연공원, 관광지 입장료(주차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 해설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피해예방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표 7>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예시)

단 계	대응 요령
평 시	■ 비상연락망 구축,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교육 등 ■ 미세먼지 마스크 구비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 이상**	■ 온라인 게시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고농도 발생 **'나쁨' 상황** (미세먼지(PM10) 81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상황 전파 ■ **야외활동(작업) 자제** ※ **불가피한 활동 시 마스크 지급, 깨끗이 씻기** 등

단 계	대응 요령
주의보 (미세먼지(PM10) 15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야외활동(작업) 자제** ※ **활동시간이나 활동일자 조정** 등 해당일 활동 자제 ▪ 실내활동의 경우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강화
경 보 (미세먼지(PM10) 30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야외활동 금지** ▪ 실내활동 시 외부환기를 최소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유의 ※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④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따라 근무복을 제작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시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양식 ① 자원봉사활동 서약서

별첨 양식 ②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신청 양식

별첨 양식 ③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시연평가 양식(예시)

별첨 양식 ④ 해설 활동일지

별첨 양식 ⑤ 관광객(수요자)대상 제도개선 설문조사 양식

별첨 양식 ⑥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제작 지침

별첨 양식 ⑦ 유료해설활동 신고서 양식(예시)

별첨 양식 ⑧ 유료해설활동 관리대장(예시)

[참고] 해설활동 가이드라인

별첨 양식 ① 자원봉사활동 서약서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아 래 -

1. 나는 문화관광해설을 받고자 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나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나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자질양성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습니다.
4. 나는 활동 시간을 엄수하며 성실히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5. 나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장 귀하

별첨 양식 ②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신청 양식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사 진 (3×4cm)
주민번호		성 별	남 , 여	
직 업	(구체적으로)			
주 소	(집)			
	(직장)			
연락처	(집)		(휴대폰)	
	(직장)		(팩스)	
이메일			컴퓨터 사용 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학 력 ※학부는 전공, 석·박사는 세부전공 및 논문제목까지 기재(비고란)

졸업 연월	학 교 명	비 고	졸업 연월	학 교 명	비 고

어학능력

언어종류	회 화	문서작성	관련자격시험	점 수
	1·2·3·4·5	1·2·3·4·5		
	1·2·3·4·5	1·2·3·4·5		

1:전혀(또는 거의) 못한다 2:잘하지 못한다 3:보통이다 4.비교적 잘한다 5.매우 잘한다

직업경력

재직기간	직 장 명	부 서	직위	담당업무	비 고

자원봉사활동경력

활동 연월	활 동 내 용	활 동 단 체

기 타		
지원 동기		
문화관광해설활동에 대한 개인 소견		
자기소개서		

별첨 양식 ③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시연평가 양식(예시)

번 호					
시연자 성명				평가자 성명	
장 소		시연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시 분 (분)	
해 설 테 마					

평가영역		세부내용	만점	점수
기획안 작성	기획안 작성	◦ 기획안 준비의 성실성 및 내용/형식의 적절성	20	
	소계		20	
준비 및 도입 단계	사전준비	◦ 문화관광해설을 위한 준비물, 복장 등 준비	3	
	참가자와의 관계형성	◦ 참가자들과의 친밀한 분위기 조성	3	
	테마에 관한 관심유발	◦ 해설 주제에 대해 흥미와 관심 유도	4	
	소계		10	
본 해설 단계	테마	◦ 참가자 특성에 맞는 테마 선정 / 테마에 부합하는 소재와 내용 선정 / 해설 장소와 테마의 적합성	15	
	흐름	◦ 정보양의 적절성 / 불필요한 지식 나열 여부 / 앞뒤 내용의 연관성 및 일관성 / 집중과 이완,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의 적절한 배치	15	
	내용	◦ 내용의 과학성 및 정확성 / 소재활용의 적합성 / 대상지 특성 반영 / 해설가 및 참가자의 경험과 연관한 설명	15	
	진행기술 및 태도	◦ 주의와 관심의 효율적 집중과 배분 / 적절한 해설위치 선정 / 위치별 시간 안배 / 해설자의 열의와 진지한 태도 /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 자료 및 교구의 적절한 활용 / 안전사고 및 돌발사고에 대한 대처	15	
	소계		60	
마무리 단계	요약 및 정리	◦ 해설내용의 적절한 정리 요약 / 테마의 강조	5	
	표현 및 공유	◦ 체험내용에 대한 표현 및 공유	5	
	소계		10	
총 계			100	

시연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제안

별첨 양식 ④ 해설 활동일지

[시・도, 시・군・구]

배치장소								
해설사명			활동일자	20 . . .				
	소요시간		총인원	어린이	청소년	성인	남	여
1회	시작	:	명	명	명	명	명	명
	종료	:						
	(시간 분)							
2회	시작	:	명	명	명	명	명	명
	종료	:						
	(시간 분)							
3회	시작	:	명	명	명	명	명	명
	종료	:						
	(시간 분)							
4회	시작	:	명	명	명	명	명	명
	종료	:						
	(시간 분)							
5회	시작	:	명	명	명	명	명	명
	종료	:						
	(시간 분)							
계			명	명	명	명	명	명

	해설요지 (테마 및 코스)	비고(특이사항)
1회		
2회		
3회		
4회		
5회		
비 고		

별첨 양식 ⑤ 관광객(수요자)대상 설문조사 양식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에 대한 관광객 설문조사

○ 방문장소 : _____

○ 방문일자 : _____년 _____월 ____일

○ 해설사 이름 : _____(※모를 경우 공란)

⑴ 이 곳을 방문하기 이전에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표)

예 (　　) 아니오 (　　)

☞ **('예'를 선택했을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접하셨습니까?** (✓표, 중복선택 가능)

① 인터넷 ② 지인을 통해 ③ 홍보물(포스터, 브로셔) ④ 안내소 ④ 기타(　　)

⑵ 이 곳을 방문하기 이전에 다른 장소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표)

예 (　　) 아니오 (　　)

☞ **('예'를 선택했을 경우) 이전에 몇 회 정도 받아보셨습니까?** (약　　회)

⑶ 사전에 이 곳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예약하셨습니까? (✓표)

예 (　　) 아니오 (　　)

☞ **('예'를 선택했을 경우) 어떤 경로를 이용하셨습니까?**

① 인터넷 예약 ② 전화 예약 ③ 지역관광안내소 ④ 기타 (　　)

⑷ 이 곳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에 만족하십니까? (✓표)

① 매우 만족(5점) ② 만족(4점) ③ 보통(3점) ④ 불만족(2점) ⑤ 매우 불만족(1점)

☞ **만족(또는 불만족) 요인은 무엇입니까?** (✓표, 중복선택 가능)

① 전문지식 ② 해설태도 ③ 재미 ④ 기타(　　)

⑸ 이 곳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인에게 추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표)

① 매우 그렇다(5점) ② 그렇다(4점) ③ 보통(3점) ④ 그렇지 않다(2점) 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⑹ 다른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표)

예 (　　) 아니오 (　　)

⑺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전반에 관한 귀하의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성별** : 남 / 여 ○ **연령** : 만 _____세 ○ **거주지** : _____(시·도)

별첨 양식 ⑥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제작 지침

○ 주색상

1) 문화관광해설사의 이미지를 어떠한 조건에서도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한 색상활용 지침이므로 정확한 색상표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한다. 적용 시에는 White 바탕에 기본 색상표현(Primary identifier)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인쇄매체, 실사출력, 컬러출력 등) 필요한 경우 1도 단색표현은 사용 가능하나 이외에 특수표현(엠보싱, 금/은박 등)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이미지를 저해하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Primary identifier	1도 단색표현

2) 전용색상을 표현할 경우, 기본형 심볼마크는 4원색 프로세스 인쇄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응용형 단색 심볼마크 타입은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사인류의 색상적용에서 비닐시트, 페인트, 실크스크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 각각의 특성상 미세한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예시된 색상에서 가장 근접한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색상은 명시된 색상 값을 준수하여야 하나 상황에 맞게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다.

○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제작

1)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는 문화관광해설사 고유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므로 세심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주소 및 직책의 표기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글씨체의 크기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요소의 적용위치는 변경할 수 없다. 제작 시에는 예시된 규정대로 규격 및 색상, 재질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구분	규격
PAPER	백색반누보 209g/㎡
PRINT	원색 4도 옵셋인쇄 또는 별색인쇄
신분증 크기	54 X 85 mm

구분	문구	규격
신분증(앞면)	성명	윤고딕 OTF 130 12pt. 장평95% Frutiger 55 Roman 7pt. 장평 95%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로고	왼쪽하단에 적용하며 22mm X 7mm로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신분증(뒷면)	성명, 생년월일	윤고딕 OTF 120 7pt. 장평90% 윤고딕 OTF 130 7.5pt. 장평90%
	위 사람은...	윤고딕 OTF 130 9pt. 장평90%
	발행일	윤고딕 OTF 120 7pt. 장평90%, 자간 50
	경기도지사	윤고딕 OTF 140 10pt. 장평90%, 자간 100 윤고딕 OTF 120 5pt. 장평90%

별첨 양식 ⑦ 유료해설활동 신고서 양식(예시) (※해설사 작성)

문화관광해설사 유료해설활동 신고서

접수번호[1] 20 – 00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접수자)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설 대상자	성명(대표자)	단체명[2]	인원수(명)
	주소		전화번호
해설 활동 내용	날짜(연월일)		예상 소요시간 (시간 분)
	장소	시작	:
		종료	:
	금액(원)		특이사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제1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지 유료해설 활동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서류 (선택 사항)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신고 수리 (대장 기재)
해설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시·군·구)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해당 연도와 (별첨 양식 ⑧) 유료해설활동 관리대장 상 연번 기재 (예: 2017-01)

2) 단체가 아닐 경우, 공란 처리

별첨 양식 ⑧ 유료해설활동 관리대장(예시)

(20 년)

연번	활동 일자	해설사 성명	해설 대상자		금액(원)	비고
			대표자 성명(단체명[1])	인원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단체명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단체가 아닐 경우 성명만 기재

[참고] 해설활동 가이드라인

① 해설시간을 잘 지킨다.

② 시작할 때 자신에 관한 소개를 충분히 한다.

③ 미소와 웃음으로 분위기를 좋게 한다.

④ 목소리는 자연스럽고 단조롭지 않도록 변화를 준다.

⑤ 적절한 제스처의 사용이나 동의·동감 표시 등을 통해 참가자의 흥미와 집중을 유도한다.

⑥ 해설 대상과 적절하고 흥미로운 테마를 선정한다.

⑦ 테마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⑧ 해설 내용에 테마가 잘 반영되어야 한다.

⑨ 해설 대상지나 대상 유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한다.

⑩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전개한다.

⑪ 해설 내용의 전달을 돕기 위해 독특한 아이디어나 매체를 활용토록 노력한다.

⑫ 참가자의 지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관여를 유도한다.